한국부식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21. 09.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학회'이라 한다)가 「정관에 따라 국내 · 외 산업전반에 선도적 기술보급과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부설 한국부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해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국가부식방식정책 연구분야 : 국가적인 부식방식기술정책 시행에 필요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업무

② 연구/기술 개발 분야 : 부식과학 및 방식공학을 중심으로 대학 및 산업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연구소중심의 컨소시엄 연구 및 기술 개발

③ 산업표준 및 신뢰성 문서 개발분야 : 부식방식관련 한국산업표준문서를 비롯하여 학계는 물론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표준문서 개발 및 ISO 부합화 연구

④ 정부산학협력 지원분야 : 부방식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체 수요기술,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의 공공분야 기술 개발 지원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부식방식학회 부설 한국부식연구소라 함은 본 학회정관에 따라 설치된 연구중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정부관계부처로부터 관계사업에 대한 주관 및 평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관계과제를 공동으로 사업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업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부담없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정부기관(중앙, 지자체)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과 업무

제4조(연구소) ① 연구소는 학회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며, 사업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 Infra & Structure 구축
2. 정책연구수행
3. 정부출연과제 및 산업체 위탁과제 등 수행
4. 본 학회 각종 위원회 수탁업무 수행
5. 학회단체회원 연구조합 및 컨소시엄 운영
6. 기타 연구소 자율 산학협력 확산 활동

② 연구소 내에는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연구원을 확보하고, 필요시 학회회원 중에서 분야별 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파견(방문연구원)
2. 외부연구원(위촉)
3. 촉탁(단기계약직)
4. 기타

③ 연구소는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회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필요한 위원회를 다수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사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학회정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임명하며, 학회이사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연구소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의 이사회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연구조직)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산하에는 특정목적의 연구실을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과제 책임자 중에서 연구실장에 보임시킬 수 있다.

③ 연구원의 종류에는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④ 연구소 소속(형식적으로는 학회소속)의 연구원을 상시 채용할 수 있으나,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학회 회원중에서도 일정기간 채용이 가능한 경우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하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등급 수준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권한과 처우는 부식연구소 사업관리지침을 통하여 따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7조(연구시설)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총회관 6층 학회사무실에 둔다.
② 필수시설 및 장비는 제3장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매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연구실은 참여기관, 출연기관 및 학회회원기관 등의 협력기관과 제휴하여 임차하거나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제9조(출연기관) 출연기관은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 지원하며, 사업의 성과 활용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진행에 따른 경과 청문 및 서면 보고받을 권한

제 3 장 각종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소장, 기술위원장, 표준위원장, 교육위원장, 사업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학회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재정적 지출 사안에 대해서

심의기구로 활용하되, 필요시 학회장의 승인으로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연구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기술자문위원회) ① 연구소의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술적 협의 및 운영 실무를 자문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회 기술이사, 학술/편집이사 가운데 해당사항에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이사와 외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되, 사업추진과 관련 연구소내 관련책임자를 간사로서 포함할 수 있다.
④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과제, 공동장비도입, 산학협력체제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별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연구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 기술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자체평가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체평가보고서는 필요시 최소 매년 1회 작성하여 전담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⑤ 연구소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계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협약하는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재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서 확보한다.
1. 연차 및 단계 평가를 통해 배정된 학회지원금
2. 정부, 지자체 등 기업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3. 참여기관 및 출연기관 지원금
4. 연구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연구소 간접비
6. 기타 사업집행 잔여금액
 가. 사업비 발생이자에 대한 세금 환급금(이자소득세 환급금 등)
 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한 금액
 다. 통장잔액에 대한 이자
 라. 집행 잔액 반납 후 남아있는 원단위 절사 금액
 마. 집행 잔액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의 반납 시점 이후 발생 이자

제15조(지출) 연구소는 관련 당해사업비 지원기관의 집행규정 혹은 학회내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및 행정지원 인건비
2. 연구 직접수행비 및 연구 컨소시엄 공통운영경비
3. 학회협력 공통지원경비
4.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5. 성과활용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위 각 호에 수반되는 경비

제16조(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소장은 학회장에게 학회협력 공통지원경비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외부위촉 연구원 및 행정직원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연구소장은 개별 사업비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시 제15조 3호에 대한 지출비율은 학회내 관련 운영지침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학회장과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 운영비 사용실적을 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9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연구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소급적용) 이 규정은 연구소 설립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